

	<b>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</b>	규정 번호	2-5-23
		제정 일자	2022. 8. 1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/계	입학학생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사회봉사활동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활동지원)** 사회봉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학학생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 
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1. 사회봉사활동지원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활동지원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**제4조(재정)**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 교비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